

# 입법예고문

군산시 공고 제2020-1361호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개정·폐지)이유

- 기존 조례 재정비 및 현행화하고, 군산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조례안 별첨

- 가. 「제2장 체육진흥 지원」 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 나. 「제3장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
  -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재정비)
- 다. 「제4장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사항 규정
  - 기존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제정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변영로 281, 체육진흥과  
군산시청 체육진흥과(전화 : 454-3294, FAX : 454-6022,  
전자우편 : saint966@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강성자 (454-32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군산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조례와의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2장 체육진흥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교류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 2. 학교스포츠 클럽육성 및 운영
-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 제3장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제7조(설치)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
-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심의
- 3.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결산에 대한 심의
- 4.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협의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당연직 :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 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2. 위촉직 :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 또는 군산시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1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산을 위하여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조성 및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시의 출연금
-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은 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2.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운용 기금의 사용은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장부, 서류,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 1. 체육현장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민 체육진흥에 공이 큰 사람

4. 그 밖에 표창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조례 제1410호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  
조례」, 군산시 조례 제43조 「군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각각 폐지한다.

제3조(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조성·집행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집행된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입법 예고문

군산시 공고 제2020-1398호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군산시 짬뽕특화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짬뽕특화거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짬뽕특화거리 입점 중식당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 나. 지원사업의 관리 및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지원사업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3. 의견제출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위생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위생행정과(전화 : 454-3413, FAX : 454-427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위생행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짬뽕특화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짬뽕특화거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짬뽕특화거리”는 군산시 장미동 소재의 동령길을 말한다.
2.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3. “업태”란 영업이나 사업의 실태를 말한다.
4. “중식당”이란 중국음식을 전문으로 파는 식당을 말한다.
5.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영업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짬뽕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짬뽕특화거리 내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업태를 중식당으로하여 운영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
4.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짬뽕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때에는 영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6조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시로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10조(지원사업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비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사업비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천재지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영업소의 운영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지위의 승계)** ① 영업자가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지원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지원사업 신청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 지원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20 - 8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2.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0-00035호 (2020. 6. 17.)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78-8, 연안여객터미널 (소룡동)
  - 성명 : (유)한림해운
- ③ 허가목적 : 도서주민 편의 및 유람선 선착장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80번지 지선 공유수면
- ⑤ 면 적 : 420m<sup>2</sup>
- ⑥ 허가기간 : 2020. 6. 28. ~ 2023. 12. 31까지